



미국 강제삭감(Sequestration) 제도

업데이트 보고서

2019. 8. 26.

연구진

- 김현아 재정지출분석센터 센터장
- 구윤모 선임연구원

※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 참여자들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공식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목 차 ●

1. 개요	1
가. 정의 및 법적 근거	2
나. 강제삭감 제도 기능	2
2. 강제삭감 발동 사례	4
3. 강제삭감 주요 절차 (삭감 규모 설정 등)	6
4. 예산통제법(BCA of 2011) 이후 제도 수정 변화	9
· Budget Control Act(BCA) of 2011	9
· The American Taxpayer Relief Act(ATRA) of 2012	9
· Bipartisan Budget Act(BBA) of 2013	10
· Military Retired Pay Restoration Act	10
· Bipartisan Budget Act(BBA) of 2015	10
· Bipartisan Budget Act(BBA) of 2018	11
· Bipartisan Budget Act(BBA) of 2019	12

1. 개요

- ◇ 강제삭감제도를 명시한 최근 법률은 예산통제법(Budget Control Act; BCA)과 페이고법¹⁾(Pay-As-You-Go; PAYGO)으로서, 본 보고서는 기존에 작성된 “미국 재정건전화 이행수단(강제삭감; Sequestration), 2016.8.3.” 보고서의 내용 중 제도상의 변화가 있었던 부분을 중심으로 작성
- ◇ 따라서, 예산통제법과는 달리 제도의 큰 변화가 없는 페이고법(PAYGO)은 간략한 정보로 같음하였으며, 지출한도 및 기간에 있어 지속적인 변화가 있었던 예산통제법(BCA)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함
- ◇ 강제삭감에 대한 기본적인 세부 정보는 아래의 기존 보고서 참조²⁾
[http://www.kipf.re.kr/TaxFiscalPubInfo/TaxFiscalPubTrends_InterTrends-View/미국-강제삭감제도\(Sequestration\)-업데이트-보고서/525966](http://www.kipf.re.kr/TaxFiscalPubInfo/TaxFiscalPubTrends_InterTrends-View/미국-강제삭감제도(Sequestration)-업데이트-보고서/525966)

가. 정의 및 법적근거³⁾

- 강제삭감제도는 악화된 연방정부 재정상황에 대응하고자 재정적자 감축을 목표로 도입된 제도로서, 특정 예산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법의 규정에 따라 연방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예산을 삭감하는 제도
 - 강제삭감 제도는 1985년 「균형 예산 및 긴급 적자 통제법(BBEDCA of 1985⁴⁾)」에서 강제이행도구(enforcement mechanism)로서 처음 도입되었으며, 이후 다수의 법률에서 활용되어 왔음
 - BBEDCA에서 연례 적자 한도를 설정하였으며, 적자 한도 준수를 강제하기 위해 강제삭감이 사용된 것임
 - 이후, BBEDCA에서 규정한 한도는 예산집행법(BEA⁵⁾ of 1990)에서 재설정(replaced)되었으며, 이때 페이고(PAYGO; Pay-As-You-Go) 절차도 도입됨

1) P.L. 111-139

2)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미국 재정건전화 이행수단(강제삭감제도; sequestration), 2016.8.3.

3) CRS, Sequestration as a Budget Enforcement Process: Frequently Asked Questions, 2015.12.1

4) Balanced Budget and Emergency Deficit Control Act of 1985 (P.L. 99-177) → GRH(Gramm-Rudman-Hollings Act)법으로도 불리고 있음

5) Budget Enforcement Act of 1990 (P.L. 101-508)

- 강제삭감을 규정한 최근 법률로는 2011년에 제정된 예산통제법(Budget Control Act, BCA)과 2010년에 제정된 페이코법 등이 있음

Sequestration 정의 (원문 규정)

Balanced Budget and Emergency Deficit Control Act of 1985 (Part C)

(Definitions) The term “sequester” and “sequestration” refer to or mean the cancellation of budgetary resources provided by discretionary appropriations or direct spending law

나. 강제삭감 제도 기능⁶⁾

- 강제삭감은 예산 관련한 특정한 법적 의무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제도로써 활용 방법은 아래와 같이 크게 두 가지로 구분

- ① (BCA법 관련) 재량지출에 법정 한도(예산권한 기준⁹⁾)를 설정하는 방법으로 활용 (의무지출을 대상으로 한 강제삭감도 부분적으로 시행)

예산통제법(BCA; Budget Control Act)

예산통제법은 2011년에 발효

- 동 법은 미 행정부와 의회가 당시 향후 10 회계연도 동안 최소 1조 2천억달러 규모의 적자 감축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었으며, 이에 따라 의회는 적자감축 특별위원회(Joint Select Committee on Deficit Reduction)를 발족하게 됨 (하지만, 2012년 1월 15일까지 대통령과 의회가 재정적자 감축 마련에 실패⁷⁾)
- 하지만, 의회의 적자 감축 특별위원회의 적자감축안 마련이 실패함에 따라 예산통제법 규정에 근거하여 총 1.2조달러(채무이자 조정액 포함) 규모의 금액을 모든 지출항목 (across-the-board cut)에서 삭감하는 자동 삭감조치(sequestration)가 발동됨
- 당시, 이미 진행되고 있던 경기부양책의 종료(2012.12.31.)와 강제삭감 실행(예정일: 2013.1.2.)이 맞물려 급격한 정부 지출 감소를 의미하는 재정절벽(fiscal cliff)이라는 표현이 등장하게 됨
- BCA법에 따른 자동지출 삭감은 최종적으로 2013년 3월 3일⁸⁾에 첫 시행됨

6) CRS, Sequestration as a Budget Enforcement Process: Frequently Asked Questions, 2015.12

7) CRS, The American Taxpayer Relief Act of 2012: Modifications to the Budget Enforcement Procedures in the Budget Control Act, 2013.2.4

8) CRS, The Budget Control Act: Frequently Asked Questions, 2018.2.23

9) 미국 의회예산처(CBO)에 의뢰한 이메일 문의에 대한 답변 자료를 토대로 작성

1. Theresa Gullo: Assistant Director (Budget Analysis Division)

2. Geena Kim: Principal Analyst (Health, Retirement, and Long-Term analysis Division)

- ② (PAYGO법 관련) 신설 세입과 신규 의무지출법의 순 효과가 재정적자를 증가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 활용

페이고법(PAYGO Act; Pay-As-You-Go)

페이고법은 1990년 예산집행법(Budget Enforcement Act; BEA of 1990)에서 한시적으로 처음으로 도입되었으며, 이후 2010년에 영구법으로 전환

- 동 법에서는 의무(법정)지출 증가 또는 세입 감소를 야기하는 신규 입법 시 반드시 이를 상쇄하는 세입증가 또는 다른 의무지출의 감소 등 재원조달 방안이 동시에 입법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재정수지의 순 효과가 음(-)을 갖지 않도록 하고 있음
- 페이고법에 따라 분류된 법안들의 재정 효과가 적자의 증가를 가져오는 경우 의무지출에 한해 삭감(sequestration)함으로써 증가분을 상쇄하도록 운용¹⁰⁾

10) 한국법제연구원, 미국 재정법상 PAYGO 준칙에 관한 연구, 2010

2. 강제삭감 발동 사례

■ 강제삭감 발동은 BBEDCA에 의해 제도가 도입된 후 처음으로 제도가 이행된 FY1986 이래 33 회계연도(FY1986~FY2018)동안 총 10회 발생¹¹⁾ < 표 1 참고>

○ 적자한도로 인한 강제삭감 발동 2회

○ 지출한도로 인한 강제삭감 발동 2회

• (FY1991 회계연도의 경우 한 회계연도 동안 2차례의 강제삭감 발생)

○ BCA법 규정 위반*으로 인해 발동한 강제삭감은 6회

* BCA법에 근거하여 적자감축 합동 특별위원회¹²⁾가 발족되었으며, 동 법에서 당시 향 후 10년간 최소 1.2조달러의 적자감축안을 마련해야 하는 의무 규정이 있었으나, 의회 의 합의가 불발되면서 강제삭감이 발동하게 됨¹³⁾

○ OMB에서 발표하는 페이고 보고서에 따르면, 페이고법(2010년 입법) 규정에 따른 강제삭감 필요 여부에 대해 현재까지 매년 “강제삭감 필요 없음”으로 발표

페이코 보고서에서 발표한 「강제삭감 필요없음」에 대한 원문 예시

2010 PAYGO Final Report, 2011.1.13. (by OMB)

... 생략 ... Because balances on both scorecards represent PAYGO savings in net, a sequestration order is not necessary ... 생략 ...

<표 1> 강제삭감 발동 사례 (FY1986~FY2018)

(단위: 십억달러)

회차	회계연도	의회/회기	공통 삭감률
적자한도로 인한 발동 (Enforcement of deficit targets)			
1	1986	99/2	4.9% 국방(defense) / 4.3% 비국방(non-defense)
2 ¹⁾	1988	100/1	10.5% 국방(defense) / 8.5% 비국방(non-defense)
3	1990	101/1	4.3% 국방(defense) / 5.3% 비국방(non-defense)
지출한도로 인한 발동 (Enforcement of discretionary spending limits or PAYGO requirement)			
4 ²⁾	1991	101/2	1.9% 국제(international) / 0.0013% 국내(domestic)
5 ²⁾			

11) CRS, Sequestration Procedures Under the 1985 Balanced Budget Act, 2001.9.27.

12) congressional Joint Select Committee on deficit reduction (super committee라고도 불림)

13) CRS, Sequestration as a Budget Enforcement Process: Frequently Asked Questions, 2015.12.1

BCA법에서 규정한 재정적자 감축안 합의 실패로 인한 발동 (Enforcement of BCA Breach)			
6 ³⁾	2013	113/1	7.8% 국방(안보) 재량지출 / 5.1% 비국방(비안보) 의무지출 7.9% 국방(안보) 의무지출 / 5.0% 비국방(비안보) 재량지출
7	2014	113/2	9.8% 국방(defense) 의무지출 9.2% 비국방(non-defense) 의무지출 (메디케어 2% 포함)
8	2015	114/1	9.5% 국방(defense) 의무지출 7.3% 비국방(non-defense) 의무지출 (메디케어 2% 포함)
9	2016	114/2	6.8% 국방(defense) 의무지출 9.3% 비국방(non-defense) 의무지출 (메디케어 2% 포함)
10	2017	115/1	9.1% 국방(defense) 의무지출 6.9% 비국방(non-defense) 의무지출 (메디케어 2% 포함)
11	2018	115/2	8.9% 국방(defense) 의무지출 6.6% 비국방(non-defense) 의무지출 (메디케어 2% 포함)

주: FY2015~FY2018 공통삭감률 규모는 「OMB Report to the Congress on the Joint Committee Reductions for FY2015~2018」 기준으로 작성

주: 1). 강제삭감이 계획되었으나, 이 후 의회의 예산합의로 대체되어 실제 삭감은 발생하지 않음
→ 미국 의회예산처(CBO)에 의뢰한 이메일 문의에 대한 답변 자료를 토대로 작성

2). 1991 한 회계연도에 2차례의 강제삭감 발생 (1990.11.9 & 1991.4.25.)

3). FY2013 강제삭감의 공통 삭감률은 2013년 3월을 기준(당시 삭감계획 규모: 850억달러)으로 작성

출처: <CRS, RS20398, 「Budget Sequesters: A Brief Review」 by Robert Keith, 2004.3.8.> 및
<CRS, RL31137, 「Sequestration Procedures Under the 1985 Balanced Budget Act」, 2001.9.27.>를 바탕으로 재구성

3. 강제삭감 주요절차¹⁴⁾ (삭감 규모 설정 등)

■ BCA법에서 규정하는 재량지출 한도의 경우, 의회 회기¹⁵⁾ 종료 후 15일 안에 OMB에서 발표하도록 되어 있는 final sequestration report¹⁶⁾의 결과에 따라 강제삭감 발동

○ BCA법에 의한 재량지출한도에 대한 내용은 강제삭감 preview 보고서¹⁷⁾란 이름으로 대통령 예산안과 함께 발표되고 있기도 함

- 이 때 발표되는 강제삭감 보고서는 final sequestration report와는 달리 실제적인 강제삭감이 아닌 preview의 역할로서 존재

- OMB는 <Sequestration Transparency Act of 2012>에 따라 삭감예상규모(preliminary estimates)를 발표하도록 되어 있음

■ BCA법상의 강제삭감 발동 시 의무지출도 강제삭감이 이행되긴 하나, 많은 의무지출 프로그램이 면제항목으로 지정되어 있기에 강제삭감이 부분적으로만 이행됨

- 의무지출의 강제삭감 규모는 OMB Report to Congress on the Joint Committee Reductions 보고서에서 발표 (동 보고서 역시 대통령 예산안과 함께 발표)
- 2019년 8월 기준, 강제삭감이 적용되는 의무지출(non-exempt direct spending)의 경우, FY2029까지 강제삭감이 발생하도록 되어 있음

○ 비상지출이나, OCO/GWOT¹⁸⁾ 등으로 지정된 지출은 BCA법에서 제외되거나 면제 되는데, 이는 기존 상한을 상향 조정(upward adjustment)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음¹⁹⁾

- * 비상지출 및 OCO 지출 등 지출한도를 상향조정되게 하는 지출은 “한도 외 지출(Spending outside the Caps)” 로 불리기도 함²⁰⁾

14) CRS, Sequestration as a Budget Enforcement Process: Frequently Asked Questions. 2015.12

15) 미국 의회의 회기는 제1회기(first session)는 홀수 해 1월 3일(공휴일이나 월요일 제외)에 시작하여 추수감사절(11월 24, 25일)까지 이어짐 / 제2회기(second session)는 1월 25일경(월요일 제외)에 시작하여 역시 추수감사절까지 지속됨 (임재주. 국회에서 바라본 미국의회, 2013.10.30)

16) OMB Final Sequestration Report to the President and Congress for Fiscal Year 0000

17) OMB Sequestration Preview Report to the President and Congress for Fiscal Year 0000

18) OCO: Overseas Contingency Operation / GWOT: Global War On Terrorism

19) CRS, The budget Control Act: Frequently Asked Questions, 2017.9.1

○ 사회보장, 재향군인 프로그램, 메디케이드 및 그 외 저소득 프로그램들, 순이자 지출 등을 포함한 대부분의 의무지출은 전면 제외되며, 메디케어 지출은 부분적으로 예외²¹⁾

- BCA법상에서 발동되는 메디케어(=의무지출) 강제삭감의 경우 삭감률 최고 한도가 2%로 설정되어 있으나, PAYGO법에서는 4%로 설정되어 있음

* 메디케어 삭감 규모의 경우, 지출의 삭감률에 한도가 정해져 있긴 하나, 그 규모는 비국방 의무지출 강제삭감 규모의 약 2/3를 차지하고 있음

- BCA법상의 연례삭감 규모 계산 -

- ① 의회의 특별 합동 적자 감축위원회에서 정해진 총 예산 감축 규모(1조 2천억달러)에서 이자 지출 절약 규모를 제외하여 순 삭감 규모 도출

이자 지출 절약 규모는 9,840억달러의 예산삭감이 이행될 경우 감축될 것으로 전망된 이자지출 규모(2,160억달러)임

- ② 순 삭감 규모(9,840억달러)를 강제삭감 기간(9년)인 9로 나눌 경우 연간 삭감되어야 할 최종 규모(1,093억달러)가 도출됨

- ③ 최종 연간 삭감 규모가 도출되면, 이를 다시 국방분야와 비국방분야로 나누어 강제삭감이 이행됨

<표 2> BCA법상 강제삭감 연간 규모 계산 예시

(단위: 10억달러)

삭감 조치	삭감 규모
특별 합동 적자 감축위원회에서 규정한 총 감축 규모 (Joint Committee required savings)	1,200.000
이자 지출 절감 규모 (Deduct debt service savings(18%))	-216.000
순 삭감 규모 (Net programmatic reductions)	984.000
순 삭감 규모에서 강제삭감 기간(9년)인 9로 나누어 연간 삭감 규모 도출 (Divide by 9 to calculate annual reduction)	109.333
연간 삭감 규모에서 국방/비국방 분야로 반을 나눈 분야별 연간 삭감규모 도출 (Split 50/50 between defense and nondefense functions)	54.667

자료: OMB, OMB Report to the Congress on the Joint Committee Reductions for FY2019, 2018.2.12.

20) CRS, Discretionary Spending Levels Under the Bipartisan Budget Act of 2018, 2018.2.15

21) 미국 의회예산처(CBO)에 의뢰한 이메일 문의에 대한 답변 자료를 토대로 작성

1. Theresa Gullo: Assistant Director (Budget Analysis Division)

2. Geena Kim: Principal Analyst (Health, Retirement, and Long-Term analysis Division)

- 페이코법상 페이코 원칙 위반 시 의무지출만을 대상으로 강제삭감이 진행되는데, 이 때 OMB가 발표하는 PAYGO 보고서 (annual PAYGO Report; 의회 회기 종료 이후 14일 이전에 발표)에 근거하여 발동
- 강제삭감 이후 행정부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음²²⁾
 - (이용) 계정 간의 자금 이동 (transferring funds between accounts)
 - (전용) 한 계정 내에서 자금 이동 (Re-programming funds within an account among one or more PPAS(Programs, Projects, and Activities))
 - 조달관련 옵션(procurement-related options) 고려
 - 정부기관 직원 일시 해고

22) CRS, Sequestration as a Budget Enforcement Process: Frequently Asked Questions. 2015.12.1

4. 예산통제법(BCA of 2011) 이후 제도 수정 변화²³⁾

- ◇ 전반부에서 기술했다시피, BCA법상의 재량지출 한도 및 의무지출 삭감 기간 등을 수정한 다수의 법률이 발효되면서 강제삭감 제도에 지속적인 변화가 있었음
- 예산통제법(BCA)상의 강제삭감은 후속으로 입법된 총 6개의 법률들로 인해 의무지출 삭감 제도의 만료시기가 연장되거나, 강제삭감 시작시기가 늦춰지기도 함

· Budget Control Act(BCA) of 2011²⁴⁾

- BCA법(2011.8.2. 입법)에 의한 강제삭감은 최종적으로 2013.3.3.에 발동하였고, 강제삭감 발동 첫 해에는 재량지출과 의무지출 모두 강제삭감이 시작되었으며, 이후 FY2014~2021기간 동안은 재량지출은 한도를 하향 설정하고 의무지출은 실제 삭감하는 방향으로 설정되었음²⁵⁾
- (재량지출) FY2013: 강제삭감 규정 (FY2014~FY2021 기간에는 재량지출 한도 연도별 설정)
- (의무지출) FY2013~FY2021 기간 동안의 의무지출 강제삭감 규정

· The American Taxpayer Relief Act(ATRA) of 2012²⁶⁾

- BCA법에 따라 기존 원칙대로 2013년 1월 2일에 발동되었어야 할 FY2013 강제삭감 시작 기간이 ATRA법의 의회 통과(2013.1.2. 입법 발효)로 인해 2개월 뒤인 3월 3일에 발동되었으며, 삭감규모는 240억달러 축소됨
- FY2013, FY2014 한도도 하향 조정됨²⁷⁾

23) CRS, The Budget Control Act: Frequently Asked Questions, 2018.2.23

24) P.L. 112-25

25) CRS, The Impact of Sequestration on Unemployment Insurance Benefits: FAQ, 2013.7.2

26) P.L. 112-240

27) OMB, OMB Final Sequestration Report to the President and Congress for FY2017, 2017.5.19.

· Bipartisan Budget Act(BBA) of 2013²⁸⁾

■ 의회는 2013 예산합의를 통해 재량지출 한도를 2년(FY2014~FY2015)에 걸쳐 총 약 630억달러 상향 조정하였으며, 의무지출 강제삭감 기간을 연장함

○ (재량지출) FY2014/FY2015 재량지출 한도 상향 조정

• FY2014 국방 및 비국방분야의 재량지출 한도를 각각 220억달러 증가시킴²⁹⁾

• FY2015 국방 및 비국방분야의 재량지출 한도를 각각 90억달러 증가시킴

* 국방분야는 재량지출의 예산기능 중 국방(national defense; budget function 050)기능만 속해 있으며, 비국방분야는 재량지출 중 국방을 제외한 다른 모든 기능을 포함하고 있음³⁰⁾

○ (의무지출) 의무지출 강제삭감 기간을 FY2023까지 2년 연장

· Military Retired Pay Restoration Act³¹⁾

■ BBA of 2013 입법 직후 만들어진 이 법에서는 의무지출 강제삭감 기간을 FY2024까지 1년 더 연장³²⁾

· Bipartisan Budget Act(BBA) of 2015³³⁾

■ 당시 2개년 예산에 대한 합의를 도출함과 동시에 재량지출 한도 증가 및 의무지출 강제삭감 기간을 연장³⁴⁾ (BBA of 2015는 당시 국가 채무한도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채무한도의 증가도 규정)

○ (재량지출) FY2016/FY2017 재량지출 한도 상향 조정

28) P.L. 113-67

29) 국방과 비국방분야의 한도를 동일한 규모로 증가시키는 원칙을 “parity principle”이라 함

30) CRS, The budget Control Act: Frequently Asked Questions, 2017.9.1.

31) P.L. 113-82

32) OMB, OMB Report to the Congress on the Joint Committee Reductions for FY2019, 2018.2.12.

33) P.L. 114-74

34)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5년 하반기 KIPF 재정동향, 2015.12

- (FY2016) 국방 및 비국방분야의 재량지출 한도를 각각 250억달러 증가시킴
- (FY2017) 국방 및 비국방분야의 재량지출 한도를 각각 150억달러 증가시킴

○ (의무지출) 의무지출 강제삭감 기간을 FY2025까지 2년 연장

- (FY2016 강제삭감 이행) 비면제 국방 의무지출 6.8%, 비면제 비국방 의무지출 9.3%, 메디케어 2% 강제삭감 이행³⁵⁾
- (FY2017 강제삭감 이행) 비면제 국방 의무지출 9.1%, 비면제 비국방 의무지출 6.9%, 메디케어 2% 강제삭감 이행³⁶⁾

· Bipartisan Budget Act(BBA) of 2018³⁷⁾

- 동 법은 향후 2개년(FY2018~2019) 예산방향을 규정하였으며, 재량지출 한도 증가 및 의무지출 기간 연장 등 재정이슈(임시예산 연장 및 국가채무 한도 유예 등)를 다루고 있음³⁸⁾

○ (재량지출) FY2018/FY2019 재량지출 한도 상향 조정

- FY2018 국방지출 한도는 800억달러(최종한도: 6,290억달러), 비국방분야의 재량지출 한도는 630억달러(최종한도: 5,790억달러) 증가시킴
- FY2019 국방지출 한도는 850억달러(최종한도: 6,470억달러), 비국방분야의 재량지출 한도는 680억달러(최종한도: 5,970억달러) 증가시킴

<참고>³⁹⁾

FY2018, FY2019의 국방과 비국방 한도의 인상규모가 다르게 설정되었기에, parity principle을 안 지킨 것 같아 보이지만, BCA of 2011에서 규정한 FY2018 재량지출의 국방/비국방 한도를 기준으로 보면 동일한 규모로 한도를 인상하는 방법으로 동등성 원칙(parity principle)을 활용하였음

35) OMB, OMB Report to the Congress on the Joint Committee Reductions for FY2016, 2015.2.2.

36) OMB, OMB Report to the Congress on the Joint Committee Reductions for FY2017, 2016.2.9.

37) P.L. 115-123

38)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8년 상반기 KIPF 재정동향, 2018.7

39) CRS, The budget Control Act: Frequently Asked Questions, 2018.2.23.

○ (의무지출) 현재의 강제삭감 기간을 FY2027까지 2년 더 연장

- (FY2018 강제삭감 이행) 비면제 국방 의무지출 8.9%, 비면제 비국방 의무지출 6.6%, 메디케어 2% 강제삭감 이행⁴⁰⁾
- (FY2019 강제삭감 이행) 비면제 국방 의무지출 8.7%, 비면제 비국방 의무지출 6.2%, 메디케어 2% 강제삭감 이행⁴¹⁾

· Bipartisan Budget Act(BBA) of 2019⁴²⁾

■ 동 법은 향후 2개년(FY2020~2021) 예산방향을 규정하고 있으며, 재량지출 한도 증가, 의무지출 기간 연장 및 국가채무 한도 유예 등의 재정이슈를 다루고 있음

○ (재량지출) FY2020/FY2021 재량지출 한도 상향 조정⁴³⁾

- FY2020 국방지출 한도는 900억달러(최종한도: 6,665억달러), 비국방분야의 재량 지출 한도는 795억달러(최종한도: 6,215억달러) 증가시킴
- FY2021 국방지출 한도는 805억달러(최종한도: 6,715억달러), 비국방분야의 재량 지출 한도는 715억달러(최종한도: 6,265억달러) 증가시킴

○ (의무지출) 현재의 강제삭감 기간을 FY2029까지 2년 더 연장

40) OMB, OMB Report to the Congress on the Joint Committee Reductions for FY2018, 2017.5.23.

41) OMB, OMB Report to the Congress on the Joint Committee Reductions for FY2019, 2018.2.12.

42) P.L. 116-37

43) 재량지출한도의 경우, 해외비상작전(Overseas contingency Operations, OCO) 및 국제대테러전쟁(Global War on Terrorism, GWOT) 등의 지출이 포함될 경우 한도가 상향 조정되므로 규모는 더 커지게 됨

<표 5> BCA법 이후 재량지출권한 한도 변화 (2011.8~현재)

(단위: 십억달러)

법률	날짜	지출 분야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BCA	2011.8	국방	555	546	556	566	577	590	603	616	630	644
		비국방	507	501	510	520	530	541	533	566	578	590
위반시 자동 집행	2012.1	국방	555	492	501	511	522	535	548	561	575	589
		비국방	507	458	472	483	493	505	517	531	545	557
ATRA	2013.1	국방	555	518	497	511	522	535	548	561	575	589
		비국방	507	484	469	483	494	505	518	532	545	558
BBA 2013	2013.12	국방	555	518	520	521	523	536	549	562	576	590
		비국방	507	484	492	492	493	504	516	530	543	556
BBA 2015	2015.11	국방	555	518	520	521	548	551	549	562	576	590
		비국방	507	484	492	492	518	519	516	530	543	555
BBA 2018	2018.2	국방	555	518	520	521	548	551	629	647	576	591
		비국방	507	484	492	492	518	519	579	597	542	555
BBA 2019	2019.8	국방	555	518	520	521	548	551	629	647	667	672
		비국방	507	484	492	492	518	519	579	597	622	627

- 주: 1) 이중선(double line) 박스 안의 굵은 숫자는 수정된 법정 한도를 의미
 2) 위반 시 자동집행 한도는 의회의 특별 적자감축 위원회에서 합의 불발로 인해 하향 조정된 법정 지출한도(post sequester amount라고 불림)를 의미 → 미국 의회예산처(CBO)에 의뢰한 이메일 문의에 대한 답변 자료를 토대로 작성

출처: CRS, 「Budget Control Act: Frequently Asked Questions」, 2018.2.23.